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2 발의연월일 : 2024. 8. 12.

발 의 자:김은혜·서일준·박정하

김장겸 · 서범수 · 권성동

송석준 • 이성권 • 권영진

김정재 • 주호영 • 김민전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험이 발생 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리모델링주택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 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 <신 설></u> | 제84조의2(리모델링주택에 대한 |
| | 재산세 특례) 「주택법」 제2 |
| | 조제25호의 리모델링이 진행 |
| |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 |
| | 에서 "리모델링주택"이라 한다) |
| | 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리모델 |
| | 링주택이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
| |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1 |
| | 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
| |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의 |
| |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 | 금액으로 한다. |